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- 690호

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48호(2012.9.13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26호(2013.7.11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, 동작구고시 제2015-8호(2015.1.29.)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, 동작구고시 제2018-37호(2018.5.17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되고, 동작구고시 제2015-14호(2015.3.5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‘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’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8년 7월 5일
동 작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2018년 7월 5일 ~ 2018년 7월 19일

나. 공람장소 : 동작구청 주택과(☎02-820-9946), 사당2동주민센터(☎02-820-2590)
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70-7778-2311)

다. 공람대상 : 토지등소유자, 조합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

다. 의견서 제출 : 동작구청 주택과 (☎820-9946),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
(☎070-7778-2311)

라. 사업시행(변경) 계획의 요지

- 1) 정비사업의 종류/명칭 : 주택재건축사업 /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)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일대
- 3) 구역면적 : 29,996.5㎡

- 4) 사업시행자 :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류수현)
 5) 사업시행자 주소 : 동작구 동작대로35아길 14, 상가 201호(사당동, 삼성아파트)
 6)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
 6)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관계도서 참조)
 - 아파트 11개동(지하3층/지상15층), 5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 7) 주요변경 내용(관계도서 참조)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연 면 적	81,788.77m ²	80,859.0517m ²
동수/층수	13개동 / 지하3층,지상5~15층	11개동 / 지하3층,지상5~15층
세 대 수	522세대(소형주택:14세대)	514세대(소형주택:7세대)
건폐율/용적률	26.83% / 227.72%	27.14% / 223.88%

마. 관계 서류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)

바. 유의사항

- 본 공고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되오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
-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이내에 관계 서류에 내용에 대하여 동작구청 주택과(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주택과, ☎02-820-9946) 또는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[동작구 동작대로35아길 14, 상가 201호(사당동, 삼성아파트)]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, 공람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(부서)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